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53호

2025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2025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일반직·공무직·실버직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dpfc.saramin.co.kr)에서 합격 여부 **개별 확인**

○ **면접시험 응시인원, 합격(선발)인원, 합격선 등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 2025. 12. 22.(월) ~ 12. 23.(화) 10:00 ~ 17:00

○ **대 상** : 최종합격예정자(일반직, 공무직, 실버직)

○ **등록장소** :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1층 대회의실(대구 달서구 두류남9길 17)

○ **등록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붙임】과 같음

※ 점심시간(12:00～13:00)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등록 장소에는 주차 지원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예정자 중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12. 23.(화) 17:00까지 실시하고,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간 동안 신규직원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에 불참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직 교육) 2026. 1. 5.(월) ~ 1. 14.(수)
- (공무직 교육) 2026. 1. 5.(월) ~ 1. 8.(목), 1. 12.(월) ~ 1. 13.(화)

※ 신규직원 교육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예정자 등록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예정자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시보 근무를 포기할 경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다만, 1년 이내에 동일직렬의 차기 공개채용의 최종합격예정자를 발표할 경우에는 그 발표일 전일까지 유효함)

○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 및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따라 임용예정자는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징구 및 범죄전력을 조회하게 되며, 조회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는 3개월 이내의 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하여, 시보기간 중 근무 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정규 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예정자 등록 시 주말, 공휴일, 야간 근무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버직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근무성적 등 평가를 통해 재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실버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상한연령(65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 또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당해 연도의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제출가능하며, 일반 채용 신체검사의 경우 공단에서 지정하는 병원을 이용하실 경우 신체검사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공단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에 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을 시행합니다. **【붙임 2】** 참조

※ 공단에서는 최종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처 인사팀 채용담당자(☎053-605-8898, 603-11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종합격예정자 제출 서류

구 분	등록서류	발급처	비 고
공통	1. 주민등록초본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등	-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공고일(12.17.) 이후 발급분에 한함(당일포함)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병역사항 및 주소변동 사유, 날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은행 등 금융기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해당 학교	-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포함 제출
	6. 증명사진 3매	-	- 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최근 3개월 이내, 3.5×4.5cm
	7.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	- 인터넷: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
	8.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지방법원 및 인터넷 등	- 인터넷: 전자후견등기시스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직장가입자용으로 발급
	10. 채용신체검사서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	- **삼일병원(대구 달서구 월배로 436)**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 북구 팔달로 23)**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채용 신체검사"임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검사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해당자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등	- 대상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의 경우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및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5. 본인 보유 자격증(면허증) 사본	해당기관	- 응시원서 기재사항 이외의 기타 경력·자격 등 사항도 포함 제출 가능
	6. 경력 관련 증빙서류		
이동지원 운전원	1.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경찰민원포털) 등	- 합격예정자 공고일(12.17.) 기준 - 교통사고 등 운전경력 전체 기간으로 발급
	2.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한국교통안전공단	- 합격예정자 공고일(12.17.) 기준 최근3년 이내 (재발급 포함)
기타	1. 임용후보자 등록원	공단 소정 양식	- 등록장소에서 작성
	2. 결격사유 서약서 등		

[붙임 2]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안내

□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반환 청구 대상자

○ 채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였으나, **최종합격하지 못한 응시자**

□ 대상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공단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 단, 채용홈페이지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신청방법

○ 최종합격예정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및 수령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우편 발송주소**

- (우 42479)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처 채용담당자 앞

❖ **이메일 주소 :** wlsdnr7474@dpfc.or.kr, kjh2019@dpfc.or.kr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반환

□ 기타사항

○ 우리 공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청구기간까지 채용관련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해당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